##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5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용우·이원택·박홍배

전진숙 · 정혜경 · 김태선

박용갑・김우영・이학영

임미애 · 천하람 · 김주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 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 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등).

#### 법률 제 호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타목까지"를 "파목까지"로 한다.

다. 수열에너지(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타. 수열에너지(물이 지닌 열		
	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		
	너지를 말한다)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		
<u>타.</u> (생 략)	<u>파.</u> (현행 타목과 같음)		
<u>파.</u> 가목부터 <u>타목까지</u> 의 사	<u>하.</u> <u>파목까지</u>		
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			
기기・약품의 시험・검사			
・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